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위한 의견청취의견 심사 보고서

2000. 9. 6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8월 28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8월 28일
- 다. 상정일자 : 제73회 임시회 제5차위원회(2000. 9. 6)
상정, 심사, 원안동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정원배 도시개발과장)

가. 제안이유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함.

나. 주요골자

- 대상지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현석동 114-1호 ~ 177-1호간
 - 규 모 : (기정) 폭 25m → (변경) 폭 15m, 폭 6m
- 도시계획현황
 - 도시계획시설(도로), 역사문화미관지구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m)					기능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 고
	등급	종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정	대로	3류	16	25	360	보조간선 도로	현석동 114-1	현석동 177-1	일반 도로	
변 경	중로	2류	-	15	240	집산도로	현석동 115-2	현석동 145-4	'	
변 경	소로	3류	-	6	120	국지도로	현석동 148-1	현석동 156-4	'	

○ 추진경위

- '62. 12. 8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건설부고시 177호)
- '97. . .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
- 주변가로망 연계체계 등을 감안 폭원축소 및 부분
폐지 대상으로 선정
- '98. 8. 9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재검토 지시(시 → 구)
- 강변북로와 연계이용방안 및 방섬APT방면 6m 도로
와의 연계방안 강구
- 2000. 1. 11 : 도시계획시설(도로) 존 행계획 수립(토목58410-77)
- 소요기간 : 2002~2004년, 소요예산 : 6,500백만원
- 2000. 2. 22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요청(구 → 시)
- 마포구공고 1999-38호 도시계획(안)으로 요청
- 2000. 3. 18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요청건 재검토(시 → 구)
(시설58410-335호와 관련임)
- 2000. 5. 26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검토요청(구 → 시)
- 2000. 6. 21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검토요청에 대
한 회신(시 → 구) (시설58410-707호와 관련임)
- 2000. 8. 14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입안 및 공람공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 제2000-2865호)
- 신문공고 : 국민일보, 문화일보
- 공람기간 : 2000. 8. 18 ~ 2000. 8. 31(14일간)

○ 도시계획 입안사유

- 우리구 현석동 114-1호~177-1호간 폭25m 도로는 '62.12.8 도시계획 결정된 후 장기간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발생 지역이며, '97년 서울시에서 시행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의 용역검토결과 "주변 가로망 연계체계 등을 감안하여 폭원 축소 및 부분폐지 대상시설"로 조사되었음.
- 우리구에서는 당초의 서울시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결정 입안하여 서울시시장에게 결정요청 하였으나, 강변북로의 연계 이용방안과 밤섬 현대아파트 방면 폭6m 도로의 연계방안 및 강변북로에 접속시 부가차로, 부도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토록 지시된바,
-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대로 신설된 폭15m 도로는 현행과 같이 구획도로(생활도로)로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고속 및 지역간 통과교통을 담당하는 강변북로에 현재의 교통운영방식에서 접속시켜서는 곤란할 것으로 밤섬 현대APT 재건축시 개설된 폭6m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호수APT에서 접근되는 폭15m 도로의 선형에 최대한 맞추어 주며,
- 인근 주간선 도로인 서강대로와 대흥로를 이용하여 일대 교통량을 처리하는 것이 도로계획상 타당하며 기존 폭15m 도로를 강변북로에 접속시 인근 교차로간 짧은 거리, 지형상 단차, 급커브로 인한 시거불량 등 제반여건에 따라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강변북로에 미접속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서울시 검토결과 회신내용 및 마포구의회 유남열의원 제시안대로 호수아파트 앞 도로 폭을 15m로 하며 현대 밤섬아파트 폭6m 도로와 연결코자 하는 폭6m 소로와 강변북로 사이에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한 잔여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입안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현석동 114-1~177-1호간 도시계획시설(도로)는 건교부고시 제 177호(62.1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었고, '97년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결과, 주변 가로망 연계체계 등을 감안하여 폭원축소 및 부분폐지 대상시설로 조사된바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입안 및 공람공고(2000.8.18~2000.8.31)를 거쳐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당초 시(시설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도로를 기존 강변북로의 교통체계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기능전환되므로 강변북로와의 연계 이용방안과 강변북로 북측의 경남연립 재건축 등으로 확보된 폭6m 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 하였으나, 구에서는 강변북로 기능전환 대비 폭15m 도로를 강변북로에 연결되도록 도시계획 결정시, 기능전환이 늦어질 경우 사업추진이 어렵고 접속을 하더라도 지역 여건상 오르막 차선으로 인해 도로용량 감소 및 강변북로 도로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일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많아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가복단 의견대로 신설된 폭 15m 도로는 강변북로에 접속을 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구획도로(생활도로)로 이용하도록 입안하였음

호수APT 앞에서 접근되는 도로는 기존 도로와의 연계성 및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하여 폭15m로 하고 밤성현대APT 재건축시 개설된 폭6m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며, 인근도로 운영체계상 강변북로 접속은 향후 서강대로와 대흥로를 연결하여 일대 교통량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변경안을 입안하였음.

당초 호수APT앞 도로폭은 25m에서 12m로 변경 계획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폭15m로 입안하게 된 것임.

호수APT앞 도로와 밤성 현대APT앞 도로 폭6m와의 도로선형이 다소 불량하고 장래 현석재개발 완료시 일대 새로운 교통유발 가능성이 있어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62년도에 25m로 결정된 도로가 주민의견 수렴으로 15m로 줄었는데 반대의견은 없었는지?
- 답변요지(정원배 도시개발과장) : 반대의견은 없었음.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도로 폭을 12m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15m로 하는 이유는?
- 답변요지(정원배 도시개발과장) : 기존도로 신수동388-2~현석동89-1호간 폭이 15m이기 때문에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해 같은 도로폭인 15m로 하는 것임.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밤성 현대아파트 진입도로 기존 4m를 6m로 넓히는데 8m로 넓히는 것을 검토할 것.
- 답변요지(정원배 도시개발과장) : 알겠습니다.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동의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의안번호	
------	--

제출년월일 : 2000. 8.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건명 : 현석동 114-1 ~ 177-1호간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2. 상정사유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함.

3. 현황

- 위 치 : 마포구 현석동 114-1호~177-1호간
- 규 모 : (기정) 폭25m → (변경) 폭15m, 폭6m
- 도시계획 현황 : 도시계획시설(도로), 역사문화미관지구

4. 도시계획 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m)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정	대로	3류	16	25	360	보조간선 도로	현석동 114-1	현석동 177-1	일반 도로	
변경	중로	2류	-	15	240	집산도로	현석동 115-2	현석동 145-4	"	
변경	소로	3류	-	6	120	국지도로	현석동 148-1	현석동 156-4	"	

5. 추진경위

- '62.12. 8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건설부고시 177호)
- '97. . .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
 - 주변가로망 연계체계 등을 감안 폭원축소 및 부분폐지 대상으로 선정
- '98. 8. 9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재검토 지시(시→구)
 - 강변북로와 연계이용방안 및 밤섬APT방면 6m 도로와의 연계방안 강구
- 2000.1.11 : 도시계획시설(도로) 집행계획 수립(토목58410-77)
 - 소요기간 : 2002~2004년, 소요예산 : 6,500백만원
- 2000.2.22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요청(구→시)
 - 마포구 공고 1999-383호 도시계획(안)으로 요청
- 2000.3.18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요청 건 재검토(시→구)
 - (시설58410-335호와 관련임)
- 2000.5.26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검토요청(구→시)
- 2000.6.21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시→구)
 - (시설58410-707호와 관련임)
- 2000.8.14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입안 및 공람공고
 -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 제2000-286호)
 - 신문공고 : 국민일보, 문화일보
 - 공람기간 : 2000.8.18 ~ 2000.8.31(14일간)

6. 기초조사 결과

- 도로현황 : 신수동 388-2~현석동 89-1호간 폭15m 도로는 '97.4.11~11.28 도로개설(L=800m) 되었으며 미개설 구간은 현석동 114-1~177-1호간 연장 400m가 남았음. 우리구 가로망 체계상 종축을 형성하는 주간선 도로인 마포로(폭40m)와는 1km, 서강대로(폭40m)와는 400m의 거리에 위치하며 횡축을 형성하는 보조간선도로인 대흥로(폭30m), 토정길(폭20m)이 있으며 고속화도로인 강변북로(폭15m)에 접해 있음.
- 건물현황 : 호수아파트(1개동), 밤섬 현대아파트(3개동), LG아파트, 현대아파트(3개동) 등이 주변에 위치하며 골프연습장(1개소), 신석초등학교, 신수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음.
- 교량현황 : 마포대교와는 1,000m, 서강대교와는 400m 거리에 위치.

- 도시계획현황 : 도시계획시설(도로)이며 역사문화미관지구 임.
- 재개발 현황 : 현석동 190번지 및 신정동 50번지 일대 총 건립세대수 503세대의 현석 주택재개발구역 있음.

7. 자원조달방안

- 토목58700-482호(2000.2.16)와 관련임.
- 총사업비 : 6,500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기 투 자			2001요구	2002이후	비고	
		소계	'99이전	2000예산				
사업량	계	6,500			3,050	3,450		
	공사	950			-	950		
	보상	5,500			3,050	2,450		
	기타	50			-	50		
재원별	계	6,500			3,050	3,450		
	국·고				-			
	지방비	시비	6,500			3,050	3,450	
		구비						
	지방채							
	민자							
	기타							

8. 환경성 검토결과

- 대흥로와 토정길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도로개설시 교통량 분산 및 주민숙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개설시 지역 도로여건 정비 및 미관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9. 도시계획입안 사유

- 우리 구 현석동 114-1호~177-1호간 폭25m 도로는 '62.12.8 도시계획 결정된 후 장기간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발생 지역이며, '97년 서울시에서 시행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의 용역검토결과 “주변 가로망 연계체계 등을 감안하여 폭원 축소 및 부분폐지 대상시설”로 조사되었음.

- 우리 구에서는 당초의 서울시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결정 입안하여 서울시장에게 결정요청 하였으나, 강변북로의 연계 이용방안과 밤섬 현대아파트 방면 폭6m 도로의 연계방안 및 강변북로에 접속 시 부가차로, 부도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토록 지시된바,
-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대로 신설된 폭15m 도로는 현행과 같이 구획도로(생활도로)로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고속 및 지역간 통과교통을 담당하는 강변북로에 현재의 교통운영방식에서 접속시켜서는 곤란할 것으로 밤섬 현대APT 재건축시 개설된 폭6m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호수APT에서 접근되는 폭15m 도로의 선형에 최대한 맞추어 주며,
- 인근 주간선 도로인 서강대로와 대흥로를 이용하여 일대 교통량을 처리하는 것이 도로계획상 타당하며 기존 폭15m 도로를 강변북로에 접속시 인근 교차로간 짧은 거리, 지형상 단차, 급커브로 인한 시거불량 등 제반여건에 따라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강변북로에 미접속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서울시 검토결과 회신내용 및 마포구의회 유남열의원 제시안대로 호수아파트 앞 도로 폭을 15m로 하며 현대 밤섬아파트 폭6m 도로와 연결코자 하는 폭6m 소로와 강변북로 사이에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한 잔여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입안 함.

첨 부 : 위치도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도면 1부. 끝.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S=1/3,000

범례	
기정	—————
변경	—————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 위치 : 현석동114-1 ~177-1호간	
- 규모	
B=25m→15m,6m	
L=360m(240m,120m)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S=1/1,200



범례	
기정	——
변경	-----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 위치	현석동114-1 ~177-1호간
- 규모	B=25m→15m,6m L=360m(240m,120m)